

우리 위원회는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의거, 모든 방송사업자의 당해연도 재산 상황을 제출받아 6월까지 공표하고 있습니다. 해당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재산 상황 제출 사항에 따라 '09회계연도 재산상황을 작성·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제출대상

- (1) 지상파방송사업자(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)
- (2) 종합유선방송사업자
- (3) 위성방송사업자(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)
- (4) 방송채널사용사업자

나. 제출기한 : 2010년 3월 31일(수) 까지

다. 제출자료(공통)

- (1) 재산상황 제출서 1부
- (2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 별지서식 1부
- (3) 연결감사보고서 1부
- (4)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1부
 - 다만,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갈음

라. 유의사항

- (1) 제출자료 (1)/(2)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(<http://fias.kcc.go.kr>)에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규격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업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2) 제출자료 (3)/(4)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3) 자료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붙임의 「회계정보 입력 가이드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(4) 2개 이상의 권역을 가진 종합유선사업자의 경우 손익계산서, 방송매출액명세서 및 영업통계 서식은 권역별로 각각 작성하며, 그 외 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은 법인 전체 값을 본사가 입력하고 그 외 권역의 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은 모두 "0"의 값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제출처 및 문의안내

(1) 제출처 : (110-777)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
시장조사과 이기정

(2) 문의

가. 회계정리 관련 제도 에 관한 사항 : 이기정주무관 (02-750-2646)

나.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입력 관련 기술 사항 : 이정재(02-750-2668)